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평 정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치분권의 취지에 맞게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 가산점을 정비하며 평정시 협업·조직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(안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의2, 제25조의3)

- 1) 현재 특수지, 인사교류 등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점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- 2)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자율성 부여하고,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평정시에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

나.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(안 제24조제4항)

- 1) 전문직위에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, 장기 근무할수록 가산점 상승폭 확대하되, 가산점 변경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

다.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사관리(별지 제2호)

- 1) 직무수행능력 평정시 타부서 및 타인과의 협업, 다양한 의견수렴

등을 평정 사항에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평정자 및 확인자는”을 “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각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평정자”를 “평정자 및 확인자”로, “평정등급,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”을 “근무성적평정 결과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특수성, 인사의 원활한 운용”을 “특수성”으로, “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”을 “공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달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확인자에게”를 “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용권자는”을 “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, 검정시험성적확인서 등(이하 “자격증등”이라 한다)을 소지한”으로, “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,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(이하 “자격증등”이라 한다)를 소지한”을 “지도사에 대하여 해당 자격증등이 직무수행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인정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

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”을 “공인자격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격증등”을 “자격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제1호,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, 해당 자격증과 동일 분야 하위 자격증을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자격증등”을 각각 “자격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5. 제1항의 가산점이 승진임용에 기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 제24조의 제목 “(특수지 근무경력(의 가산점 등))”을 “(근무경력 가산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급”을 “임용권자는 5급”으로, “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(연구사·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”을 “영 제32조제2항”으로, “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“제1항, 제3항 및 제4항”을 각각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1. 도서·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

2. 교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

3. 특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

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영 제7조의3제3항의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3년 초과 4년 미만 근무한 경력 : 1개월마다 0.1점

2.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 : 1개월마다 0.12점

3.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: 1개월마다 0.15점

제25조의2제1항 중 “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”을 “근무실적,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”로, “3점의 범위에서 실적”을 “실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장제4절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가산점 기준의 공개 등) ① 제23조, 제24조제1항,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,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,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.

제27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명부는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이를 조정하여”를 “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한 경우”로 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“작성권자는”을 “작성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,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시 평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기존 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동 규칙 개정 후 첫 번째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제2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기존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기 승진시까지 기존의 가산점을 종전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 [별지 제6호서식]으로 이동 <2013.1.18.>

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

소 속		직 급		성 명	
근무성적평가 결 과					
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					
년 월 일 신청자 성명: 서명:					
확인자의 결정 내용					
년 월 일 확인자 성명: 서명:					
위원회의 결정 내용					
년 월 일					
위 원 성명: 서명:			위 원 성명: 서명:		
위 원 성명: 서명:			위 원 성명: 서명:		
위 원 성명: 서명:			위 원 성명: 서명:		

()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

□ 평정 대상기간: 부터 까지

성명	소속	직위	직급	현 직급 임용일	현 보직일

1. 담당 업무

2. 근무실적 평정(50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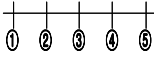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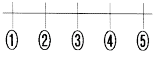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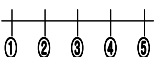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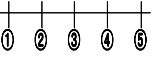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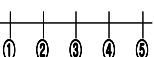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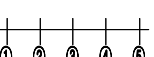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	업무 비중(%) ㉮	주 요 실 적	평정요소				소계 점수
				업무난이도 (10점) ㉬	완성도 (20점) ㉭	적시성 (20점) ㉮	합산 점수	
1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2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3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4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추가 업무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추가 업무				0 1 2 3 4 5	0 1 2 3 4 5	0 1 2 3 4 5		
총 점								

비고

- 1) 추가 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한다.
- 2)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(①)-미흡(②)-보통(③)-우수(④)-탁월(⑤)의 5단계로 평가하되, 불량(①)은 원래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, 미흡(②)은 원래 계획에 미달한 경우, 보통(③)은 원래 계획을 달성한 경우, 우수(④)는 원래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, 탁월(⑤)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다.
- 3) 합산점수 = ㉬+㉭+㉮, 소계점수 = ㉮×(㉬+㉭+㉮),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한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3. 직무수행능력 평정(50점)

일련 번호	평정 요소	요소별 배점	내용	평정등급	소계 점수
1	기획력	9점	-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. -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.		
2	의사 전달력	6점	-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. -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.		
3	협상력	6점	-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. -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.		
4	추진력	5점	-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한다. -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.		
5	신속성	5점	-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. -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.		
6	팀워크	8점	-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. -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. - 조직의 성과를 중요시하며, 다른 부서 및 타인과 협업하여 일을 처리한다.		
7	성실성	5점	- 지각·조퇴·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-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.		
8	고객· 수혜자 지향	6점	-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혜자(다른 공무원)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,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. - 업무 추진시 정책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.		
총 점					

비고: 평가요소별로 '전혀 그렇지 않다(①)-거의 그렇지 않다(②)-가끔 그렇다(③)-자주 그렇다(④)-항상 그렇다(⑤)'의 5단계로 평가한다.

4. 종합평가

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	종합평정 의견	
	실적	
	능력	

평정자 직위(직급):

성명:

서명:

확인자 직위(직급):

성명:

서명:

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

○ 소속 : ○ 직급 : (현 직급 임용일 : 년 월 일)
 ○ 성명 : ○ 평정일 년 월 일

경력 평정 대상 기간	구분	직급	경력기간(연·월·일)	환산경력기간
	총 환산경력기간 : 년 월 일(개월)			
가산 경력				

환산경력기간	월평정점	환산개월수	평정점
년 이내			
년 초과			
가산경력			
총평정점 :			

가산점 항목	구분(예시)	가점내역	근무기간	월평정점	평정점
	직무관련 자격증 등				
	근무경력 (특정직위, 특정업무 등)				
	전문직위 근무				
	근무 실적				
	기타				
	총평정점 : (점)				
평정자	직위 :		성명 :	(서명 또는 날인)	
확인자	직위 :		성명 :	(서명 또는 날인)	

비고 :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(전출)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 성적평정) ①·② (생략)	제8조(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 성적평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.</u>	③ <u>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3항에 <u>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,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. 다만,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,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</u>	⑤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.

⑥ · ⑦ (생략)

제1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(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,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,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.

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

_____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) ① 평정자 및
확인자-----

-----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-----

--- 특수성 -----

----- 공개의 범위
와 내용에 대하여 달리 -----

② -----

----- 확인자에게 별지
제7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
여 --.

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3조(자격증 등의 가산점)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,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(이하 “자격증등”이라 한다)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.

1. 「자격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

2.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

3.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자격증 등의 가산점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증, 검정시험성적확인서 등(이하 “자격증등”이라 한다)을 소지한 -- 지도사에 대하여 해당 자격증등이 직무수행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인정되는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공인자격증

2. -----

----- 자격증

3. 기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

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,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.75점을 넘을 수 없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.

1. · 2. (생략)

3.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

4.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

<신설>

④ (생략)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. 다만,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

<삭제>

③ ----- 경우(제1호,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, 해당 자격증과 동일 분야 하위 자격증을 포함한다)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자격증

4. ----- 자격증

5. 제1항의 가산점이 승진임용에 기반영된 경우 해당 자격증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.

⑥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등을 신설·변경·폐지하는 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24조(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) ①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(연구사·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.

1. 특수지 특지·갑지에서 근무한 경력: 1개월마다 0.025점
2.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

<삭 제>

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임용권자는 5급 -----

--- 영 제32조제2항 -----

---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도서·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
2. 교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

력: 1개월마다 0.018점

3.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

력: 1개월마다 0.013점

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.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0.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임용권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·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업무(「지방공무원

있는 경우

3. 특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

있는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9
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
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)

2.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
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
관리 업무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다. 「소하천정비법」

라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
관한 법률」

마. 「재해구호법」

바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사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
리법」

아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
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
률」

자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
법」

차. 「지진·화산재해 대책
법」

카. 「풍수해보험법」

타.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
관한 특별법」

파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
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
특별법」

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
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2년을
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
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
줄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
점은 각각 총 0.75점을, 제2항
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각
2.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
없다.

⑥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 따
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

④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
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영 제7
조의3제3항의 기간 이상 근무한
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
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
체의 전문직위 운영 현황 등을
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
의하여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
있다.

1. 3년 초과 4년 미만 근무한 경
력 : 1개월마다 0.1점

2. 4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
력 : 1개월마다 0.12점

3.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: 1개
월마다 0.15점

<삭 제>

⑥ 제4항-----

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
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
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일
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
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에 따
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
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
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.

제25조의2(실적 가산점) ① 임용
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
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
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
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
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
·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
따라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
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
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
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
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
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
야 한다.

<신 설>

-----.

⑦ 제4항-----

-----.

제25조의2(실적 가산점) ① ----

----- 근무실적, 공헌도 등을
고려하여 -----

--- 실적 -----
-----.

<삭 제>

제25조의3(가산점 기준의 공개
등) ① 제23조, 제24조제1항,

제2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) ① ~ ⑤ (생략)

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, 3점을 넘지 못한다. 이 경우 제3항 중 “근무성적평정점” 및 “평정점”은 각각 “실적 가산점”으로 본다.

⑦ · ⑧ (생략)

제31조(명부의 조정 및 삭제)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

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,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· 개정 ·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,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.

제27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명부의 조정 및 삭제) ① 다음 -----

----- 명부

<u>조정하여</u>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 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② (생략) 제32조(명부 순위의 공개)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. <u>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<u><신설></u>	<u>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조정한 경우</u>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2조(명부 순위의 공개) ① --- -- <u>작성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 ② <u>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,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시 평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2